

[붙임 4]

해외산림인턴사업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 가이드 라인

1. 사업비 편성기준

가. 체재비

○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기업체인턴	1,400	1,200	1,000	800
국제산림협력인턴	1,400	1,200	1,000	

* 국제산림협력 인턴은 “다”, “라”급지를 통합하여 “다”급지로 지원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별첨 1] 참고

○ 체재비는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교통비, 공공요금 등 해외체류를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말함

- 국가 및 지역별(“가”급지~“라”급지) 체재비 지원기준 세분화하여 산출

*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함

나. 항공료

○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국가	주요도시	왕복항공료	국가	주요도시	왕복항공료
중국	북경	400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500
일본	도쿄	400	러시아	모스크바	1,600
동남아	홍콩	600	영국	런던	1,800
호주	시드니	2,000	프랑스	파리	1,700
미국	뉴욕	2,500	독일	함부르크	1,700
미국	LA	2,200	바레인	바레인	1,900
파라과이	아순시온	3,000	이집트	카이로	1,800

※ 항공료 지원기준 상하한선은 비·성수기를 감안 10% 가감

○ 이코노미석 기준 실제 항공료 적용

- 지역별 국가별, 주요 도시별 항공료 지원기준 세분화

- 파견국가의 사업 현장까지의 실 소요경비를 지급

- 지원기준이 없는 국가나 도시는 인근 요금 가감 적용하거나 과거 집행 (정산) 금액 적용가능(기업체 지원한도 3,000천 원/인)

다. 보험료

- (편성기준) KOICA 해외봉사단 해외여행보험 가입 기준에 준하는 보상
(참고)<KOICA 해외봉사단 해외여행보험 가입 담보내역>

적용대상	담보금액	담보기간
해외사무소 직원 & 관리요원, 인턴직원	상해사망/휴유장애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상해의료비	
	국내 상해 입원	
	국내 상해외래/처방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국내 질병 입원	
	국내 질병 외래/처방	
특별비용		

- 현지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없이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
 - 단체 보험 계약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모색
 - ※ 특히, 신흥지역 등 파견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보험을 지양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라. 비자 발급비

- 예산편성은 미국, 영어권, 일본, 중국 및 동남아권으로 구분하여 산출
(단위 : 천원)

미국	영어권	일본	중국·동남아	오세아니아·홍콩
2,000	1,000	600	300	100

- * 영어권은 캐나다, 영국, 유럽, 남미 등
- 파견 지역별로 인턴 활동에 적합한 비자발급 비용을 실비 지원
- 방문 목적(취업, 인턴, 연수 등)과 체류기간에 따라 적법한 비자 종류 발급 원칙 준수

마. 교육비

- 현지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15년 3월 → '16년 2주)
 - 전문교육기관인 산림교육원 교육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현지 어학연수 및 직무교육비 등 현지교육비 편성 및 집행은 불가함(필요시 인턴 활용기업 또는 자비로 부담 가능)
 - 단, 사전에 승인된 온라인 교육(영어, 인니어 등 어학교육, 소양 및 직무관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편성 및 집행 허용
 -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 시 수료증 및 교육 참석 증명서(80%이상 이수 증빙) 제출필요

[별첨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